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2-4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의 제공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1. 담보금 제공의 면제대상

가. 담보금 2분의1 면제대상

1)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나. 담보금 전액 면제대상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경우

2) 최초 후납 계약일로부터 4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3) 우편관서장이 우편요금 후납 신청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여 건실하다고 판단한 경우

4) 1개월간 납부하는 우편요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6)「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다목에 따른 계약소포우편물과 「국제특급우편 취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계약국제특급우편물(EMS) 후납의 경우 추가 면제 사유

가) 우편관서 물류창고 입점업체로서 요금후납 담보금액에 걸맞은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나) 최근 2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다)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다. 담보금 면제기간 산정 기준

1) 시행일(면제기간 산정일)을 기준으로 현재 계약우편관서와 그 동안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적용

2) 다만, 현재 계약우편관서와 계약하기 이전에 다른 우편관서와 요금 후납계약을 체결하고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용실적을 기준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전우편관서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우편관서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우편요금을 체납한 경우 담보금 제공 면제취소 기준

가.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1) 담보금 2분의1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면제취소

2) 담보금 전액 면제대상 : 담보금 제공 2분의1 면제

나.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1) 담보금 전액면제 대상 : 담보금 제공 면제취소

다. 「우편법 시행규칙」제85조제2호다목에 따른 계약소포우편물과 「국제특급우편 취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계약국제특급우편물 (EMS) 후납의 경우 추가 면제 취소 기준

1)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납부 기준일로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을 연속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라. 우편요금 후납 계약우편관서의 장은 요금체납으로 담보금 면제를 취소 받은 후납계약자에 대하여는 2년간 담보금 면제 혜택을 금지할 수 있음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9호(2010. 9. 1.)는 폐지한다.